

고 시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2-28호

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

건설교통부 제1979-428호(1979.11.22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8-409호(2008.11. 13)로 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종로구 공평동 139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 합니다.

2012년 4월 27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명칭 (변경없음)

○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(변경없음)

구분	정비구역 명칭	위치	면적 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기 정	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	종로구 공평동 139번지 일원	2,018	-	2,018	-

3. 건축시설계획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주 된 용 도	건축면적 (건폐율)	연면적 (용적율)	층수 (높이)	비 고
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 (㎡)						
기정	청진구역 제17지구	2,018	17	1,986	공평동139 번지 일대	근린,업무, 판매,위락	993㎡이하 (50%이하)	15,888㎡이하 (800%이하)	18층이하 (74m이하)	소로2-1측 공개공지 2m확보
변경	청진구역 제17지구	2,018	17	1,986	공평동139 번지 일대	근린,업무, 판매,위락	1,033㎡이하 (52%이하)	15,888㎡이하 (800%이하)	18층이하 (74m이하)	소로2-1측 공개공지 2m확보

4. 변경사유

- 건축계획 조정에 따른 건폐율등의 변경

5. 관계도서

-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도서와 같음

6. 관계도서 열람

-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02-2148-2673)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 끝.